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529

발의연월일: 2022. 5. 9.

발 의 자:이상헌・김두관・김성환

김진표 • 박 정 • 서영교

안민석 · 양이원영 · 이병훈

이상민 • 이수진 • 전용기

한준호 · 홍영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14%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지원, 의료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문화·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47 조의3). 법률 제 호

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3의 제목 중 "장애인"을 "장애인 및 고령자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장애인의"를 각각 "장애인과 고령자의"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"장애인"을 각각 "장애인과 고령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행 혂 개 정 아 제47조의3(장애인 관광 활동의 제47조의3(장애인 및 고령자 관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광 활동의 지원) ① ----------<u>장애인과 고</u>령 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 대하고 <u>장애인의</u> 관광 활동을 <u>자의</u>-----<u>장</u>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 애인과 고령자의-----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장</u> (2) -----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 애인과 고령자-----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과 고령자----<u>장</u>애 <u>인과 고령자</u>-----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 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